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25. 10. 1.>

고 지 정 보 서

제 20○○-○○ 호 년 월 일

이 고지정보서는 아동·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의 지역주민 중 아동·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 및 관련 기관(아래 참조)에 송부하는 것입니다.

※ 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 ·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,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(경계를 같이 하는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포함), 교습소, 개인과외교습자, 학교교과교습학원,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· 아동일시보호시설 · 아동보호치료시설 · 공동생활가정 · 지역아동센터, 청소년복지시설, 청소년수련시설

(사진촬영일: 0000년 00월 00일)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정면
사진</td><td colspan="2">좌측
사진</td><td colspan="2">우측
사진</td><td rowspan="2">전신
사진</td></tr>
<tr><td>이름</td><td></td><td>나이</td><td></td><td>신체정보
(키·몸무게)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주민등록상 주소</td><td colspan="5">(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,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실제 거주지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성범죄 요지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성폭력범죄
전과사실
(죄명, 횟수)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전자장치부착여부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부가기록</td><td colspan="5">#부가기록 작성 예시
위 고지대상자는 신규 우편고지대상자임.
위 고지대상자가 위 거주지로 전입하였음.
위 고지대상자는 동일한 읍면동내에서 실거주지가 변경됨.
위 고지대상자가 위 기재된 실제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음.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참고사항</td><td colspan="5">고지정보서를 송부받은 읍·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해야 함</td></tr>
</table>

유의사항

1. 이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신문·잡지 등 출판물,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(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)하거나 공공장소 게시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(「형법」 제307조제1항 등).
2.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고지대상자의 고용,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,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. 위반 시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3. 귀 세대(기관)에서 이 고지서를 받은 시점에 고지대상자가 고지된 실제 거주지에 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, 실제 거주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국민신문고,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로 알려주시면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.

성범죄자 알림e 다운로드 및 설치

(iOS) (안드로이드)

성 평 등 가 족 부 장 관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